

제 11 장

예외

제 11.1 조

일반적 예외

1. 제 2 장(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), 제 3 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, 제 4 장(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) 및 제 5 장(무역구제)의 목적상, 1994년도 GATT 제 20 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

2. 제 6 장(서비스무역) 및 제 7 장(투자)의 목적상, GATS 제 14 조(그 각주를 포함한다)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

제 11.2 조

안보 예외

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
가.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

나.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
1) 무기,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,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대 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

- 2)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
 - 3) 통신, 전력 및 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공 사회기반시설을 불능화 또는 기능 저하를 시키고자 하는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, 또는
 - 4) 국내적 비상시, 또는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, 또는
- 다.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「국제연합 헌장」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
제 11.3 조

과세조치

1.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.
2. 이 협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과세 조치와 관련하여 권리나 의무를 부과한다.
 - 가. 그에 상응하는 권리 및 의무가 1994년도 GATT 제 3 조에 따라 또한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경우
 - 나. 제 7.11 조(송금)에 따라 권리 및 의무가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경우, 또는
 - 다. 제 7.12 조(수용 및 보상)에 따라 권리 및 의무가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경우

3. 제 2 항나호 또는 다호가 적용되는 경우, 제 7.19 조(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)는 과세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.

4. 가. 투자자가 분쟁당사국이 과세조치를 채택 또는 집행함으로써 제 7.11 조(송금) 또는 제 7.12 조(수용 및 보상)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, 분쟁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 7.19 조(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)에 따라 분쟁당사국이 투자자의 의사통보를 접수한 때, 비분쟁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협의를 요청한다.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 7.11 조(송금)에 위반되었는지 또는 해당 과세조치가 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최한다. 제 7.19 조(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)에 따라 설치될 수 있는 모든 판정부는 이 항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수용한다.

나.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 7.11 조(송금)에 위반되었는지 또는 과세조치가 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비분쟁당사국의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180 일 내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, 투자는 제 7.19 조(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)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.

다. 이 항의 목적상,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.

1) 한국에 대하여, 기획재정부 세제실장, 그리고

2) 인도네시아에 대하여, 재무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

또는 그 각각의 승계인

5. 과세 관련 조치가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, 다음 고려사항들이 고려된다.

가. 조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.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조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.

나.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 세법의 집행 활동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.

다.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, 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. 특히, 조세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.

라.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개별 납세자¹를 겨냥하는 것과는 반대로,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,

마.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었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,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.

6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과세조치와 관련된 불합치가 있는 경우,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.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.

7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구속되는 조세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우,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.

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“개별 납세자”라는 용어는 자연인, 법인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다.

8. 이 조의 목적상,

가. 조세협약이란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. 그리고

나. 조세 및 과세 조치는 제 1.1 조(일반 정의)에 정의된 관세, 그리고 그 정의 중 나호, 다호, 라호 및 마호에 예외로 기재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.

제 11.4 조 정보의 비밀유지

1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, 자국의 법에 반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.

2.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,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, 정보를 받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. 그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명시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. 당사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,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.